

## 임예진 관세법(2023년 대비) 개정사항 (1)

- 관세법 2022. 9. 15. 개정 [시행 2022. 9. 18.]
- 관세법 시행령 2022. 9. 15. 개정 [시행 2022. 9. 18.]
- 관세법 시행규칙 2022. 9. 6. 개정 [시행 2022. 9. 6.]

1차 p.28 / 2차 p.28 : 5. 수정

### 5.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을 말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외국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1차 p.556 / 2차 p.526 : 1.의 (1) 관련 시행령 박스 중 영 제246조 제6항 수정

#### 수출환율 [영 제246조 제6항]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외국환매입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1차 p.238 / 2차 p.211 : 3. (2) 수정

(2) 기본면세범위

상기 (1)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상기 (1) ①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상기 (1) ③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 제1항 제1호 단서(입국장 인도장) 및 법 제196조 제2항(입국장 보세 판매장)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미화 600달러	미화 800달러

1차 p.239 / 2차 p.212 : 3. (3)의 표 수정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2병	2병 합산하여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꺾련	200개비	
	엽꺾련	50개비	
	전자담배	꺾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1병	2병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병 합산하여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1차 p.455 / 2차 p.428 : 4. (1), (3) 수정

(1) 입국장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상기 1. (2)에 따라 설치된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3)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상기 (1) 및 (2)에도 불구하고 상기 (1)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상기 (2)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미화 600달러	미화 800달러